

##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조카가 동거중인 삼촌의 물건을 절취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글/ 박종복 변호사

Q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장조카에게 도둑이 있다. 조카는 집안 식구들의 호주머니를 뒤져 잔돈을 훔치더니 최근에는 삼촌인 본인의 노트북까지 훔쳐다가 팔아먹었다. 형님은 장조카를 감싸고 돌지만 나는 조카의 도둑을 고치려면 경찰서에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촌 물건은 훔쳐도 죄가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

A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는 형법 329조에 의하여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제3자를 말하므로 귀하의 조카는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 형법은 제328조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친족상도례 규정이라고 하는데 절도죄 이외에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형법이 친족간의 절도죄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격언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개념을 따르게 되는데 귀하는 조카와 3촌

간이므로 직계혈족은 아니고 방계혈족이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조카와 한집에 동거중이라면 조카를 고소하여도 형이 면제되므로 조카가 처벌받지 않겠으나, 한집에 동거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인 귀하의 고소가 있다면 조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친고죄는 고소취소가 있게 되면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고소이후 조카가 참회하면 고소를 취소하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고소취소를 하려면 제1심 판결 선고전에 하여야 한다.

